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431호 2019. 4. 1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1999.06.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소로3-15호선, 사업명: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5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5호선)사업
 - 【명칭】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5호선) L=153m, B=3m 중
미집행 시설 L=36m, B=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원당동	807-4	도	468.7	468.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				
2	인천 서구 원당동	산117-4	임	1,198	1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3	인천 서구 원당동	산117-3	임	16,639	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계				18305.7	610.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주)바우하우스 (대표자 : 공병도)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 나. 대지면적 : 55,086㎡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0,146.7953㎡ (지하 2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8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403,504,264천원
4. 사업기간 : 2019. 5. 1. ~ 2022. 4. 30.
5. 변경사항
 - 가. 연면적 변경(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등 변경)
 - 기존 : 연면적 151,952.3673㎡
 - 변경 : 연면적 150,146.7953㎡

나. 사업비 변경

- 기존 : 407,639,559천원
- 변경 : 403,504,264천원

다. 사업기간 변경

- 기존 : 2019. 4. 1. ~ 2021. 11. 30.
- 변경 : 2019. 5. 1. ~ 2022. 4. 30.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3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주)신영루원시티개발, (주)신영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3블록
 - 나. 대지면적 : 23,045㎡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9,911.4915㎡ (지하 3층, 지상 4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7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사 업 비 : 466,763,695천원
4. 사업기간 : 2019. 5. 20. ~ 2022. 11. 1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 유승한내들 신축
2. 사업주체 : (주)유승종합건설 (대표 민광옥)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 나. 대지면적 : 57,1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3,735.5502㎡ (지하3층, 지상24~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93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346,520,492천원
4. 사업기간 : 2018. 10. 19. ~ 2021. 09. 18.
5. 변경사항
 - 가. 근린생활시설 구조 변경(파일기초 위치 변경, 피트 설치, 기초 파일 추가)

나. 지하주차장 기초 및 기둥 변경 등(기둥하부 기초크기 변경, 파일기
초 변경, 파일 추가, 기둥 크기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달로 29-6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4.1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4-1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0-7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29-6 (석남동)	20090706	옛 견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1	인천광역시 서구 가천로 91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1-13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74 (왕길동)	200903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60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78-15 (백석동)	20171025	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0-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9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11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06번길 40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21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1번길 32 (석남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90번길 17 (석남동)	20151113	원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62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안길 11 (원창동)	20171025	파랑로11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28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안길 13 (원창동)	20171025	파랑로11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의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9-9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430	소로1-30	시천동 37-3	일반도로	2018.7.23.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96호)
변경	소로	1	31	10	국지도로	430	소로1-30	시천동 37-3	일반도로	"	종점부 시설폭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31호선	중점부 도로시설폭 변경	지적불부합에 따른 선형 조정 및 중점 회전교차로부 시설폭 축소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 4.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선정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의 2호를 ‘면제’에서 ‘100분의 80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기존의 장애인 등급(1~6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3항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2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로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으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2019. 5.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133, FAX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선정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의 2호를 ‘면제’에서 ‘100분의 80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기존의 장애인 등급(1~6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3항 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2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로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으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부수된” 을 “떨린” 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적합하거” 를 “적합하지 않거”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 를 “분명하게 밝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보수” 를 “개수·보수” 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휴대한” 을 “지닌” 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행사 및” 을 “및”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
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제12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는” 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으로, “국가유공자”
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과 장애등
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을 “등록장애인과 장
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으로 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제12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고”를 “되돌려주고”로, “반환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센터 시설”이란 체육시설과 그에 <u>부수된</u>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 ----- 1. ----- ----- <u>딸린</u> ----- ----- 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공익상 <u>부적합하거나</u>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p>	<p>제6조(사용허가 제한) ----- ----- ----- ----- 1.·2. (현행과 같음) 3. ----- <u>적합하지 않거</u>----- ----- -----</p>
<p>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 ----- <u>없으면</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및 대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u>명시하여</u> 구민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p>	<p>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 ----- ----- ----- <u>분명하게 밝</u> <u>혀</u> -----.</p>

1. 시설의 개·보수 등 위험이 예상
될 때

2. (생략)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
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4. (생략)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사용허가
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한다.

1. (생략)

2. 체육관 대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
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 개수·보수 -----

2.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
----- 지닌 -----

3.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

-----.

1. (현행과 같음)

2. -----
없으면 -----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 및 경기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 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신 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4. (생략)

④ · ⑤ (생략)

<신 설>

-----.

1. -----
----- 및 -----

<삭 제>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 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않는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되돌려주고-----
----- 되
돌려준다.

제21조(준용규정) -----
않은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 4.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으로 “구 체육회”로 변경.

2. 주요내용

- ‘구 생활체육협의회’ 문구를 ‘구 체육회’ 문구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2019. 5.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 032-560-4133,
FAX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구 생활체육협의회” 를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
으로 “구 체육회” 로 변경.

2. 주요내용

- ‘구 생활체육협의회’ 문구를 ‘구 체육회’ 문구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산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 를 “긴급하거” 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생활체육협의회” 를 “체육회”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여” 를 “세워” 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개·보수” 를 “개수·보수”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를 “사람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 를 “지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란하게 하는” 을 “어지럽히는”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전에” 를 “미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실태를 수
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게이트볼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개방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3. (생략)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
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
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
람
4. (생략)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
가 게이트볼장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② -----

----- 세워 -----
-----.

제9조(개방제한) -----

-----.

1. ----- 개수·보수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사람에
게-----.

1. (현행과 같음)
2. -----
----- 지닌 -----
3. ----- 어지럽히는 -----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 미리 -----

-----.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3.27.]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으로 “구 체육회”로 변경.

2. 주요내용

- ‘구 생활체육협의회’ 문구를 ‘구 체육회’ 문구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하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 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u>관하여</u> <u>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u>----- -----.</p>
<p>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u> <u>요하</u>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긴급하</u>거----- -----.</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게이트볼장의 사용은 신청순에 의한다. 다만 시설부족으로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p>
<p>1. 2. (생 략) 3. 구 <u>생활체육협의회</u> 4. (생 략)</p>	<p>1. 2. (현행과 같음) 3. -- <u>체육회</u>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설의 개방) ① 게이트볼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u>없</u>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p>	<p>제8조(시설의 개방) ① ----- ----- ----- <u>없으면</u> ----- -----.</p>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실태를 수
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게이트볼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개방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3. (생략)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
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
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
람
4. (생략)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
가 게이트볼장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② -----

----- 세워 -----
-----.

제9조(개방제한) -----

-----.

1. ----- 개수·보수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사람에
게-----.

1. (현행과 같음)
2. -----
----- 지닌 -----
3. ----- 어지럽히는 -----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 미리 -----

-----.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3.27.]